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6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이종성・김예지・이종배

권명호 · 김용판 · 정경희

김석기 · 임이자 · 최승재

배현진 · 김미애 · 정점식

전봉민 · 강기윤 · 윤창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 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음. 해당 유치원 원생 등 100명 이상이 설사·구토등의 증상을 겪고 이 중 58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아 심각한 신장훼손과 평생 남을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임. 이처럼 노인 및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식품위생안전 관리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

현행법 제88조제2항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준수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고 실제 처분되는 과태료 수준도 50만원에 불과해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처럼 미약한 제재로 인해 역학조사에 중요한 보존식이 미보관・

폐기되는 등 집단식중독의 원활한 원인조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를 한 자
-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과태료) <u><신 설></u>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부과한다.</u>
	<u>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u>
	2.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u>의 신고를 한 자</u>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	1
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u>포함한다)</u>
<u>86조제1항</u> 을 위반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	<u><삭 제></u>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u><</u>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